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행정지원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3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(안 제2조)

- 지방공무원의 총수 : 1,586명 → 1,592명 (+6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36명 → 42명 (+6명)

나.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(안 제3조 관련 별표 2)

-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
 - 7급 → 34.5% 이내 (증 0.5%)
 - 전문경력관 → 0.5% 이내 (감 0.5%)

다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정원 총계 : 1,586명 → 1,592명 (+6명)
- 일반직 계 : 1,576명 → 1,582명 (+6명)
 - 6급 이하 : 1,496명 → 1,502명 (+6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범위 내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붙임 참조
- 3) 입법예고 : 2023. 2. 16. ~ 2023. 2. 21.
- 4) 입법예고 결과 : 제출의견 1건

부서	개 정 안	수 정 안	검토의견	반영 여부												
행 정 지 원 과	[별표2]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 1. 일반직공무원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...</td> <td>전문경력관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...</td> <td>(0.5)% <u>이상</u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...	전문경력관	비 율	...	(0.5)% <u>이상</u>	[별표2]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 1. 일반직공무원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...</td> <td>전문경력관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...</td> <td>(0.5)% <u>이내</u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...	전문경력관	비 율	...	(0.5)% <u>이내</u>	우리 구 인력 운영상 전문경력관 정원을 0.5% 이내로 조정하고 필요한 직급의 비율에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	반영
구 분	...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
비 율	...	(0.5)% <u>이상</u>														
구 분	...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
비 율	...	(0.5)% <u>이내</u>														

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586명”을 “1,592명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36명”을 “4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4.5)% 이내	(30)% 이내	(5)% 이상	(0.5)% 이내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 이하
비 율	(15)% 이내	(45)% 이내	(25)% 이내	(15)% 이상

비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592	1,592			
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1,582	1,582			
3급	1	1	0	0	0
4급	8	6	1	1	0
5급	69	33	2	14	20
6급 이하	1,502	1,502			
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9	5	4		
5급상당	1	1			
6급상당 이하	8	4	4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

행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586명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36명

[별표2]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4)% 이내	(30)% 이내	(5)% 이상	(1)% 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586	1,586			
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1,576	1,576			
3급	1	1	0	0	0
4급	8	6	1	1	0
5급	69	33	2	14	20
6급 이하	1,496	1,496			
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9	5	4		
5급상당	1	1			
6급상당 이하	8	4	4		

개정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

1,592명-----
-----.

2. ----- 42명

[별표2]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4.5)% 이내	(30)% 이내	(5)% 이상	(0.5)% 이내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592	1,592			
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1,582	1,582			
3급	1	1	0	0	0
4급	8	6	1	1	0
5급	69	33	2	14	20
6급 이하	1,502	1,502			
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9	5	4		
5급상당	1	1			
6급상당 이하	8	4	4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건비 연간 소요액 : 360,000천원(구비 360,000천원)
 - 산출내역 : 60,000천원 × 6명
- 인건비 산정기준 : 2023 임기제공무원 7급 연봉(하한액기준) + 각종수당
 - 산정내역 : 기본연봉+성과연봉+복리후생비(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대민활동비)
+정근수당+가족수당(배우자)+특수업무수당+초과근무수당+명절휴가비
- 임금인상률 : 연 2% 적용(최근 5년 평균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구분							
세출	인건비	360,000	367,200	374,544	382,035	389,676	1,873,455
	소 계	360,000	367,200	374,544	382,035	389,676	1,873,455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구분							
국 비		-	-	-	-	-	-
시 비		-	-	-	-	-	-
구비	자체재원	360,000	367,200	374,544	382,035	389,676	1,873,455
	의존재원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
합 계		360,000	367,200	374,544	382,035	389,676	1,873,455

5. 기타사항 : 없음

6. 작성자

-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홍지현